자본시장 혁신과제 ⑫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2019. 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금융투자협회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행 인가체계 현황과 평가 ····· 2

Ⅲ. 개편 방안 ····· 5

전략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 6

전략2. 기존 증권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 11

전략3. 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 17

전략4.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 21

Ⅳ. 향후 추진계획 ····· 23

[참고1] 현행 인가정책 방향 및 인가심사요건 ····· 24

[참고2] 인가체계 개편 후 인가 및 등록 단위 ····· 25

[참고3] 사회적 신용과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 비교 ····· 27

[참고4] 투자자예탁금과 예금보험금 지급 방법 비교 ····· 28

Ⅰ. 추진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계**」로 **전환**

○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을 **마련**

- 금융기능에 따라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인가제·등록제**를 **적용**

○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인가단위를 추가**(add-on)하는 방식으로 **업무영역을 확장**

-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을 완화**하면서 인가단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적극 유도**

□ 기능별 인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 금융투자업 내에서 **상이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통일**하여 **업권간 차별을 해소**하고 **특화금융투자업자 진출경로**를 마련

○ 동일한 기능 내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크기**(전문, 일반투자자)에 따라 **진입 상 규제**를 구별하는 등 선진적 규제체계 도입

□ 다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인가단위 세분화**와 **add-on**시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엄격한 심사요건**으로 조직형태 변경 등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저해**하는 측면

⇒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Ⅱ. 현행 인가체계 현황과 평가

1. 현황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로 **구분**하고,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을 적용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황

업무단위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33종	**인가** (41종*) *투자자유형 구분없는 경우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 공모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4종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4종	
집합투자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종	**등록** (4종)
투자자문업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2종	
	▸펀드·파생결합증권·RP·예치금		
투자일임업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1종	

○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단위**를 **원칙적**으로 **인가***를 통해 **추가**(add-on) **승인**을 받아 **업무를 확장**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경우만 등록제이고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간 업무 확대시 인가제를 운영

○ **포괄적 인가제도***를 마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군**의 **인가**를 받으면, **동 상품군 內 금융투자상품업무**를 모두 수행 **가능**

* 투자중개업 내에서 증권상품군 포괄인가를 받는 경우, 증권·채무증권·국공채·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취득 관련 투자중개업이 가능

○ **특화된 금융투자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투자상품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별 인가단위**도 마련

* 증권상품군에서 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집합투자증권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

2. 평가

◇ 증권사의 **대형화**는 **진전**되었으나, **특화·전문증권사 유도**는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 변경** 이후, '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

○ 신규 진입은 많지 않았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 1조원이상 대형 증권사 : '01년 5개사(8.2%) → '09년 10개사(16.1%) → '18년 12개사(21.4%)

○ 자본시장법 제정 직후인 **'08~'09년 중 10개 증권사**(국내 9사*, 외국계 1사)가 **신규로 진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분류

- **신규로 진출**한 증권사는 **모두 특화 증권사**로 **인가 정책상 특화 증권사에 한하여 인가**를 한 결과

- **'10년이후 신규로 진입**한 증권사는 **6개사***(국내 2사, 외국계 4사)

* (국내) 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펀드온라인코리아)
* (외국계) 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

□ **특화 증권사 육성 전략**에도 **전문화·특화 증권사**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특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전문화 특화 증권사 : '01년 5개사(8.2%) → '08년 12개사(19.6%) → '19.3말 11개사 (19.3%)

※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자산운용사는 인가요건 완화로 '08년 15개 → → '19.3말 207개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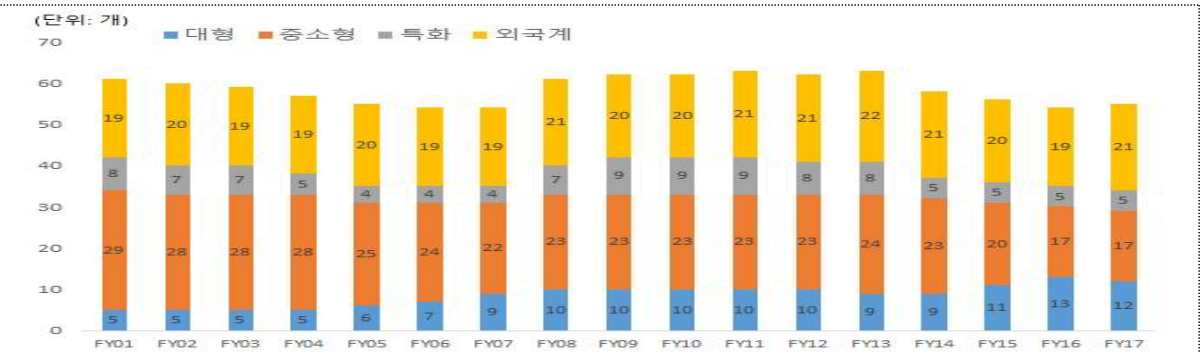

주 : 1) 종합증권사 중 대형사는 자본 1조원이상의 증권사, 1조원 미만은 중소형사로 구분
2) 외국계는 외국계 법인 및 지점 증권사를 포함하며 유안타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국내증권사로 분류

◇ 인가단위 세분화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부담이 큰 상황

□ 진입절차 등이 다소 복잡한 가운데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서 **업무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

○ 세분화된 인가단위마다 **모두 신규 진입과 동일한 수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

* '09.2~'19.3월간 금융투자업 인가중 신규인가가 아닌 취급상품 범위 변경인가 등(변경인가·조건취소)이 전체 인가건수(303건)의 61.7%(187건)

- 특히, **인력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요건**을 **신규인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시간과 절차가 길게 소요

* 인가단위별·직종별 전문 인력 수를 규정하고 다수 인가 취득시에는 원칙적 합산방식을 취하고 인가단위가 클수록 다수의 고용부담 발생

○ 특화증권사로 **진입 후 업무추가 관련 부담과 절차**가 있어 **단계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

◇ 경직적인 인가실무 운영으로 업무추가와 형태변경이 어려운 상황

□ 업무추가시 **대주주 및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을 재심사**하고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존재**

○ 旣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 **매번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특히, **지배구조법**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해 **매년 2년마다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와도 중복**적임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는 **업무확장시 재차 심사**할 **실익이 적고 사업계획 요건***상 **재량여지가 큰 편**으로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위험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절할 것, 업무방법을 갖출 것 등

□ **조직변경이나 형태변경** 등에서도 **신규인가 이상의 절차**와 **승인 등** 형식적 인가절차를 요구하여 **원활한 변경에 어려움**

Ⅲ. 개편 방안

기본방향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시장친화적 · 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

〈 전략 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과제1. 신규진입 관련 인가정책 정비 • 전문화·특화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폐지 • 1그룹 1증권사 1운용사 허용 폐지 과제2.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한 인가요건 완화
〈 전략 2〉 기존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과제3.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 기진입한 증권사는 등록으로 업무 확장 • 등록시 사업계획타당성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면제 과제4. 업무추가 · 조직변경 관련 심사요건 개선 • 영업실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인가절차 및 심사 대폭 간소화
〈 전략 3〉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과제5. 최대심사기간 설정 과제6. 대주주 변경 및 재진입 관련 요건 합리화
〈 전략 4〉 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	과제7. 인가 · 등록 요건 개선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정비 과제8.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에 따른 NCR 반영 방식 조정

전략 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1. 증권회사

현 행

□ **전문화·특화 증권사** 진입 활성화 및 **증권사 대형화** 유도를 위해 **인가 정책을 엄격하게 운영**

○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업(Full License)은 불허하고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허용**

○ **동일 그룹**내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증권사 설립**만을 **허용**하고 전문화·특화된 경우에만 복수 증권사를 인정

개선 방안

□ 인가단위 조정을 통한 **전문화·특화정책*** **폐지**

○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

* 기존 선물회사, 크라우드펀딩업체, 중소기업 전문증권회사제도 등 별도의 인가정책없이도 전문화·특화는 일정수준 달성 가능

□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여 그룹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

* 증권사 간의 M&A시에도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보다 유연한 PMI (Post Merge Integration) 전략 활용 가능

2. 자산운용사

1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현 행

□ **사모운용사**의 경우,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어 1그룹 복수운용사를 자유롭게 설립 등이 가능

○ 다만,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을 통해 중복되지 않고 **업무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 복수운용사 설립**만을 **허용***

* (예) 미래에셋운용+멀티에셋(대체투자 전문),
삼성운용+삼성액티브(액티브투자 전문)+삼성헤지(헤지펀드운용 전문) 등

□ **제한적 복수운용사 설립인가 정책**으로 공모운용사의 경우 **운용사 신설·분사·인수가 제약**되는 등 **경영자율성을 저해**

개선 방안

□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도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운용사의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

2 공모운용사 전환 기준 완화

현 행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모운용사**의 경우 **일정한 경험과 업력**을 요구

○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모운용사로 인가는 허용하지 않고 사모운용사 단계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허용시에도 자본금 등의 요건 이외에 **인가정책상 일정한 업력과 수탁고 요건 등이 충족**될 것을 요구

□ **사모운용사로 최초 진입**한 후, 업력과 수탁고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는

❶ 사모운용사가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한 이후,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거나,

❷ 사모운용사가 **종합운용사**로 **직접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두 가지

□ 다만, 공모운용사 전환 요건 중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

개선 방안

□ 공모운용사 전환 기준 중 수탁고 요건을 1/2수준 완화

○ **(사모운용사→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운용업+일임업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사모운용사에 대해 **수탁고 요건을 1/2수준 완화***

* 수탁고 요건 완화에 따른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60여개사 예상

구분	업력	수탁고	준법의식
기존	- **운용업 + 일임업 : 3년** (단, 운용업 1년 필수) - **운용업 + 리츠업 : 3년** (단, 운용업 2년 필수)	-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3천억원**[1)**] 1)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1년간) 중 펀드 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 - 펀드수탁고(NAV) + 리츠수탁고*(평가액) **3천억원**[2)**] 2)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2년간) 중 펀드 수탁고는 평균 **2천억원** 이상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 36개월(월말 기준) 평균	-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
개선	**상동**	- 펀드수탁고(NAV) +일임계약고*(평가액) **1.5천억원**[1)**] 1)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1년간) 중 펀드 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 - 펀드수탁고(NAV) +리츠수탁고*(평가액) **1.5천억원**[2)**] 2)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2년간) 중 펀드 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 36개월(월말 기준) 평균	**상동**

□ (**사모 및 단종 공모운용사→종합운용사 전환**시) 운용업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운용사에 대해 수탁고 요건을 **1/2 수준 완화***

* 수탁고 요건 완화에 따른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10여개사 예상

구분	업력	수탁고		준법의식
기존	- 운용업 : 5년	공통	-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3조원****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사모→종합사) -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
		개별요건	**(증권 공모운용사) 3조원** 중 공모펀드 **1조원**** 이상 **(부동산 or 특자 공모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3천억원**** 이상 **(사모 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3천억원**** 이상 ** 60개월(월말 기준) 평균	
개선	상동	공통	-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1.5조원****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상동
		개별요건	**(증권 공모운용사) 1.5조원** 중 공모펀드 **0.5조원**** 이상 **(부동산 or 특자 공모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 **(사모 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 ** 60개월(월말 기준) 평균	

□ **중장기**적으로 **시장 수요·공급 등 상황**을 보아가며,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현 행

□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최저자기자본**을 설정

○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투자자를 구별**하여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을 달리**하는 측면

투자중개업			
상품군	금융투자상품	최저자기자본	
		전문	전문+일반
증권		15	30
	채무증권	5	10
	지분증권	5	10
장내파생	...	10	20
장외파생	...	50	100

투자매매업			
상품군	금융투자상품	최저자기자본	
		전문	전문+일반
증권		250	500
	채무증권	100	200
	지분증권	125	250
장내파생	...	10	20
장외파생	...	50	100

□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인가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일화할 필요**

○ **대부분 전문투자자로 진입**하거나, 자본금을 늘려 포괄적 단위로 신규진입하고 있어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실익이 적음**

개선 방안

□ 금융투자상품별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관련 **구별을 없애고,**

○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을 일원화된 인가단위별 **필요 자기자본요건**으로 설정

□ 다만, **전문투자자**와 **일반+전문투자자 등 대상 투자자별 구분 관련 인가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하여

○ **기존 전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현 행

□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 다소 긴 **경력기간 요건**과 **경력자**를 적기에 채용하기 곤란한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요건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특히, 긴 사전준비 기간을 거치는 신규진입과 달리 **업무추가시**에는 **인력요건을 제때에 충족**하는데 **어려움**

개선 방안

□ 분야별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년 → 1~3년 경력자)하여 인력요건 충족관련 과도한 부담을 완화

전략 2 기존 증권회사의 업무추가 · 변경 원활화

가.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현 행

□ 현행 인가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등록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단위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단위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단위·등록 4단위****로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 **개별 인가단위**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상**과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등 투자자를 구분**하여 **요구 자기자본을 차등화**

□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의 경우 **필요한 겸영·부수업무**에 한하여 **인가**를 통해 **금융투자업 영위**가 **가능**

개선 방안

□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

○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

○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 유지**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 다만,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현행처럼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방식**으로 **인가**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

<투자중개업 인가·등록단위 조정(예시)>

업종	금융투자상품		최저 자기자본(억원)	
	상품군	개별 상품	전문	일반+전문
투자중개업	증권		15	30
		채무증권	5	10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5	10
		집합투자증권	5	10
		RP 중개(증권)	5	
	장내파생		10	20
		주권기초	5	10
	장외파생		50	100
		주권기초	25	50
		주권외 기초	25	50
		통화.이자율 기초	10	20
	ATS	매매체결대상상품	200	
	장외채권중개	채무증권	30	

⇒ 투자중개업의 인가 23단위에서 →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단순화

<투자매매업 인가·등록단위 조정(예시)>

업종	금융투자상품		최저 자기자본(억원)	
	상품군	개별 상품	전문	일반+전문
투자매매업	증권		250	500
		채무증권	100	200
		국채.지방채.특수채	37.5	75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125	250
		집합투자증권	25	50
	증권(인수제외)		100	200
		채무증권	40	80
		국채.지방채.특수채	15	30
		사채권	20	40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50	100
		집합투자증권	10	20
		RP대상 증권		60
	증권(인수만)*	채무증권 사채	30	60
	장내파생		50	100
		주권기초	25	50
	장외파생		450	900
		주권기초	225	450
		주권외 기초	225	450
		통화.이자율 기초	90	180
	ATS	매매체결대상상품	300	

* 개선시 투자매매업-사채(인수만) 업무단위는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 예정

⇒ 투자매매업의 인가 38단위에서 → 인가 5단위, 등록 19단위로 단순화

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1 심사요건 완화

현 행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를 위한 **인가의 경우**, 신규진입시 인가보다 일부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 중**

○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중 대주주의 벌금형(신규인가시) 대신 **최대주주의 5억원 이상 벌금형**을 결격요건으로 **심사**

구분	신규인가시	업무추가시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없을 것	①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법, 조세법 위반으로 5억원이상 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5년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법령에 따른 영업허가.인가.등록 취소된 대주주 등이 아닐 것	

□ 인가체계 개편에 따라 등록을 통한 **신속한 업무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

개선 방안

□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기존 대주주를 재심사하는 것이 중복적

*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제도 : ①대상: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②주기: 2년마다 ③위반시 조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 **본인 요건 관련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를 완화**

○ 대주주 결격치유 사유를 준용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제외***

* 현재는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

○ 향후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금융관련 업무와 **상호관련성이 없는 제재**(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예외 인정 검토**

2 인력요건의 완화

현 행

□ 업무추가 시, **단순합산방식**으로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여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채용을 부담**하는 구조

○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추가적 인력충원** 요구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확장 시, 큰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

○ 특히,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추가**의 경우,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단순합산 방식 **인력요구**는 **과중한 측면**

<예시 : 투자중개업 증권 →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업무 추가시>

○ 투자중개업 인력 요건**(6명)** - 조사분석전문 1명 - 투자권유자문 5명	+	○ 추가업무 인력요건**(3명)** - 투자권유자문 2명 - 장외파생후선 1명

⇒ 장외파생 후선 1명과 투자권유자문 2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어 기존업무와 중복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 2명 추가고용 요구는 과도한 측면

개선 방안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관련**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다.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 부담 완화

현 행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법인형태 변경**이 빈번히 발생

○ 대표적으로 ❶ **지점 →현지법인**, ❷ **현지법인 → 지점**, ❸ 국내지점의 **외국계 본점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

□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

* ①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②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③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④ 영업양수도 승인 등 4가지 인가·승인이 필요하고 인가·승인에도 7개월 이상 절차가 소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는 단순 형태변경임에도 **신규인가 이상의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어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부담**이 발생

○ 특히,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상 형태변경이 잦은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과 지점**에게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

개선 방안

□ **형태변경**에 따른 중복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 **인가**(금융위) →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으로 4단계 절차를 **2단계로 축소**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

⇒ 비인가 폐지와 업무위임으로 **심사시간 대폭 단축**(7~12개월 → 5개월)

<조직형태 변경관련 심사요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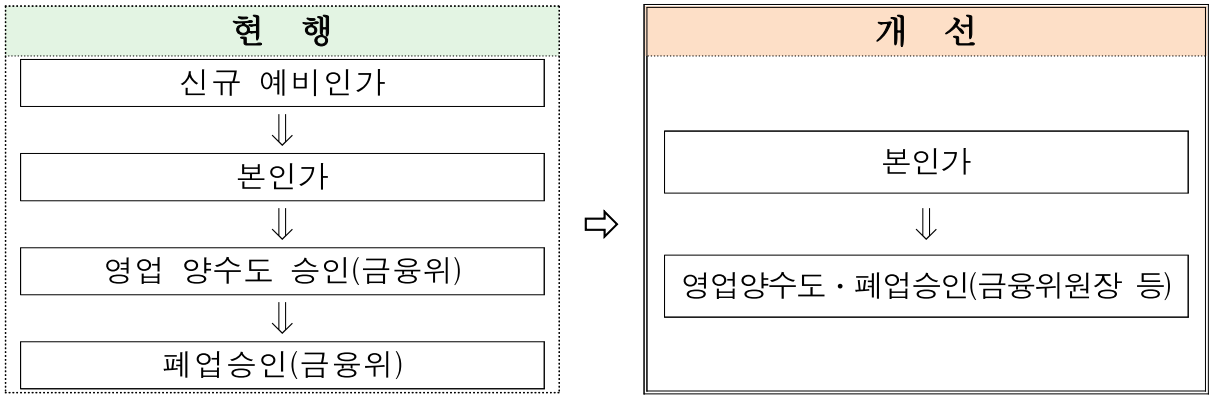

□ **단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심사요건 일부도 면제 또는 완화**

○ **기존 영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심사는 면제**

○ **인력요건**은 변경 신규인가가 아닌 **단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당시 부칙 등을 통해 기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규인가 전까지는 인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 (금투업규정 부칙 제2017-5호, 제3호)

- 기존 인가 이후 인력요건 관련 변화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가를 받은 인가요건 상의 인적요건을 인정**

○ **본인요건** 및 **대주주요건** 심사시 **등록에 따른 업무추가**시에 적용될 예정인 **완화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 : **위반이 경미**하거나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시회적 신용요건 **심사시 제외** 등

- **대주주** :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

○ 대주주심사 대상 관련, **대주주 변경시** 심사를 이미 받은 대주주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추가되는 대주주만 심사토록 개선**

전략 3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심사중단 최대 기간 설정

현 행

□ 인가·등록시 **본인·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시 심사 중단*** 가능

* 금융위·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심사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당국의 조사 착수시 **기계적으로 인가가 중단**되어 법령상 인가·등록 심사의 **처리기간**(예비인가2개월+본인가1개월)이 **형해화**되는 문제*

* 특히, 금융그룹의 경우 금감원의 상시적 부문검사로 인해 인가신청 당사자와 대주주(지주 또는 母금융사) 모두 검사를 받지 않는 시기에만 인가 가능

개선 방안

□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

○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 **예외적**으로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심사 중단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제재 절차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재개**

○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나.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현 행

□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사회적 신용조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 진입단계에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

○ **최초 신규진입** 시에는 **대주주 전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부 대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

* 유권해석에 의하면('07.2.22) "당초 지배주주 요건 심사대상인 주요주주였다면, 추가적인 주식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또 다시 요건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 실무상으로는 일부 대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이 없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

○ 일부 대주주 변경 시에도 기존 대주주를 전부 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 또한, **조직형태 변경**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대주주 전부를 심사**하여 형태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

개선 방안

□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

○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대주주 변경 시에도 기존 심사를 받은 대주주*는 제외하고 **변경된 대주주**만 **심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다. 단기금융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마련

현 행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신규 진입시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의무화**

* 사회적 신용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①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취소
②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양벌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신용질서 저해, 업무전부정지처분
③ **(최근 2년간)** 업무일부정지처분
④ **(최근 1년간)** 지점, 영업소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

(다만, 사회적 신용요건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

□ **단기금융업** 겸영 인가시 금융투자업과 달리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이 불비**(입법적 불비)

○ 입법 불비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중 준법성 요건***을 **적용**하여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준법성 요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건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금투업규정 별표2 제3호 라목)

○ 다만, **준법성 요건**의 경우 구체적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사회적 신용요건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재에 한해 준법성 요건을 적용 중**

개선 방안

□ **단기금융업 겸영**도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서 **본인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반영**

라.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현 행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 속칭 **'라이센스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진폐지 한 경우, **일정기간 인가신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 다만, **경영전략상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자진폐지의 경우**에는 **인가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개선 방안

□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속칭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다만, 일정기간(예:10년) **여러차례 자진폐지 + 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전략 4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가. 투자자예탁금 제도 정비

현 행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에 **투자자예탁금의 투자자 반환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

○ 파산 등의 경우, 금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 관련절차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원칙·기준 등 **상세절차**가 **부재**

○ **파산 등의** 경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고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여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 발생 가능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완화 등에 맞추어 **투자자예탁금 반환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예탁금지급제도 정비**가 **필요**

○ 특히, **투자자예탁금 지급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법령 등에 규정하고 회사가 내부기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정비

개선 방안

□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절차** 등 마련

❶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❷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❸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절연을 명확화**

□ **관련 TF***를 **구성**하여 **세부기준과 절차** 등 마련

* 금융위, 금감원, 증권금융, 금투협회, 예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안 마련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에 따른 NCR 계산방식 조정

현 행

□ **NCR**은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비율**로 증권회사의 **건전성 측정** 지표

○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의 **70%로 산출**하고 있어,

-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이 변경**되면 **NCR도 변화**

□ **일반+전문투자자 대상** 영업시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전문투자자 대상 기준**으로 **완화**함에 따라,

○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가 축소되어 **실질에 관계없이 NCR이 상승**하는 문제* 발생

* (예) 현행 NCR 계산방식으로 총 56개 증권사 평균 NCR은 488.2% → 873.3%로 1.8배 상승

개선 방안

□ 실질과 관계없이 NCR이 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대상별 자기자본비중을 차등 적용**

○ **일반+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NCR 계산**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가중치를 100%* 적용**하여 **산출**

* 필요자기자본의 1/2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고, 美 SEC의 NCR 제도 등의 국제적인 규제 정합성과도 일치

○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NCR 계산시 종전처럼 70%**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Ⅳ.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을 **보다 속도감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화 등을 추진

○ **'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규정도 신속히 정비**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과제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	발표 즉시 시행*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시행령 개정	'19.하반기
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금투업규정 개정	'19.하반기
과제2. 기존 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가. 인가체계 개편	법 개정안 국회제출	'19.하반기
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19.하반기
다.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 부담 완화	시행령 등 개정 인가 Fast Track	'19.하반기
과제3. 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심사중단 최대 기간 설정	시행규칙 등 개정	'19.하반기
나.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	발표 즉시 시행
다. 단기금융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	'19.하반기
라.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관 완화	금투업규정 개정	'19.하반기
과제4. 인가제도 개선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 등		
가. 투자자예탁금 제도 정비	TF 구성 및 제도마련	'19.하반기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에 따른 NCR 계산방식 조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19 하반기

* 기존에 부관 등을 통해 업무특화를 받은 곳은 금융위 의결(인가조건 취소) 후 적용

참고 1 현행 인가정책 방향 및 인가심사요건

□ 경쟁도 등 **금융투자업 여건**을 감안하여 **인가정책 방향을 발표·운용**

구분		심사요건
전업금융투자업자		▸전문화·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설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 ▸리스크 증가 소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심사 ▸동일그룹내 전문화·특화 복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증권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내 업무 추가 허용 ▸신탁업 추가 허용
	선물사	▸증권 매매업·중개업 추가 허용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제한적 허용)
	자산운용사	▸증권펀드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 ▸부동산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
겸영금융투자업자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등 추가 허용 * 예시:퇴직연금사업자로써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

□ **인가심사요건**은 **신규인가**시 뿐만 아니라, **업무추가 변경인가**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

* 대주주요건 일부 완화(예 : 대주주 벌금형 → 최대주주 5억원 이상 벌금형)

구분	심사요건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등
자기자본 요건	▸인가·등록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이상일 것 (설립시 자본금 기준)
임원 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에 적합할 것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아닐 것 ▸임원이 금투업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임원 등이 아닐 것 등
인적·물적 요건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전문인력을 일정수 이상 확보하고 배치할 것,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구비할 것 등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
대주주 요건	▸대주주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아닐 것 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영업정지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참고 2 인가체계 개편 후 인가 및 등록 단위

1 투자중개업 인가체계 간소화 (인가 23종 ⇒ 인가 1종, 등록 13종)

(단위 : 억원)

순번	인가단위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 유형	자기자본
1	2-1-1	증권	일반+전문	30
2	2-1-2	증권	전문	15
3	2r-1-2	RP 대상증권	전문	5
4	2-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10
5	2-11-2	채무증권	전문	5
6	2-12-1	지분증권	일반+전문	10
7	2-12-2	지분증권	전문	5
8	2-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10
9	2-13-2	집합투자증권	전문	5
10	2-2-1	장내파생	일반+전문	20
11	2-2-2	장내파생	전문	10
12	2-21-1	장내파생(주권기초)	일반+전문	10
13	2-21-2	장내파생(주권기초)	전문	5
14	2-3-1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
15	2-3-2	장외파생	전문	50
16	2-31-1	장외파생(주권기초)	일반+전문	50
17	2-31-2	장외파생(주권기초)	전문	25
18	2-32-1	장외파생(주권 이외)	일반+전문	50
19	2-32-2	장외파생(주권 이외)	전문	25
20	2-321-1	장외파생(통화, 이자율)	일반+전문	20
21	2-321-2	장외파생(통화, 이자율)	전문	10
22	2a-1-2	ATS(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	200
23	2i-11-2i	장외채권중개(채무증권)	전문	30

⇒

인가	등록단위	금융투자 상품	자기자본
투자중개업	2-1-1	증권(전체)	15
	2-11-1	채무증권	5
	2-12-1	지분증권	5
	2-13-1	집합투자증권	5
	2r-1-2	RP 대상증권	5
	2-2-1	장내파생(전체)	10
	2-21-1	주권기초만	5
	2-3-1	장외파생(전체)	50
	2-31-1	주권기초만	25
	2-32-1	주권이외	25
	2-321-1	통화.이자율	10
	2a-1-2	ATS(전문)	200
	2i-11-2i	장외채권중개(전문)	30

※ 개선후 : 인가 필요 업무단위 등록 필요 업무단위

② 투자매매업 인가체계 간소화 (인가 38종 ⇒ 인가 5종, 등록 19종)

(단위 : 억원)

순번	인가단위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 유형	자기자본
1	1-1-1	증권	일반+전문	500
2	1-1-2	증권	전문	250
3	1-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200
4	1-11-2	채무증권	전문	100
5	1-111-1	국채.지방채.특수채	일반+전문	75
6	1-111-2	국채.지방채.특수채	전문	37.5
7	1-12-1	지분증권	일반+전문	250
8	1-12-2	지분증권	전문	125
9	1-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50
10	1-13-2	집합투자증권	전문	25
11	11-1-1	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200
12	11-1-2	증권(인수제외)	전문	100
13	11-11-1	채무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80
14	11-11-2	채무증권(인수제외)	전문	40
15	11-111-1	국채.지방채.특수채(인수제외)	일반+전문	30
16	11-111-2	국채.지방채.특수채(인수제외)	전문	15
17	11-112-1	사채권(인수제외)	일반+전문	40
18	11-112-2	사채권(인수제외)	전문	20
19	11-12-1	지분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100
20	11-12-2	지분증권(인수제외)	전문	50
21	11-13-1	집합투자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20
22	11-13-1	집합투자증권(인수제외)	전문	10
23	11r-1r-1	RP 대상증권(인수제외)	일반+전문	60
24	12-112-1	사채권(인수제외)	일반+전문	60
25	12-112-2	사채권(인수제외)	전문	30
26	1-2-1	장내파생	일반+전문	100
27	1-2-2	장내파생	전문	50
28	1-21-1	장내파생(주권기초)	일반+전문	50
29	1-21-2	장내파생(주권기초)	전문	25
30	1-3-1	장외파생	일반+전문	900
31	1-3-2	장외파생	전문	450
32	1-31-1	장외파생(주권기초)	일반+전문	450
33	1-31-2	장외파생(주권기초)	전문	225
34	1-32-1	장외파생(주권 이외)	일반+전문	450
35	1-32-2	장외파생(주권 이외)	전문	225
36	1-321-1	장외파생(통화, 이자율)	일반+전문	180
37	1-321-2	장외파생(통화, 이자율)	전문	90
38	1a-1-2	ATS(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	300

⇒

인가	등록단위	금융투자 상품	자기자본
투자매매업 [증권]	1-1-1	증권(전체)	250
	1-11-1	채무증권	100
	1-111-1	국채.지방채.특수채	37.5
	1-12-1	지분증권	125
	1-13-1	집합투자	25
투자매매업 [증권] (인수제외)	11-1-1	증권(전체)	100
	11-11-1	채무증권	40
	11-111-1	국채.지방채.특수채	15
	11-112-1	사채권	20
	11-12-1	지분증권	50
	11-13-1	집합투자	10
	11r-1r-1	RP 대상증권	30
	<폐지>		
	<폐지>		
투자매매업 [장내파생]	1-2-1	장내파생(전체)	50
	1-21-1	주권기초만	25
투자매매업 [장외파생]	1-3-1	장외파생(전체)	450
	1-31-1	주권기초만	225
	1-32-1	주권이외	225
	1-321-1	통화.이자율	90
[ATS]	1a-1-2	ATS(전문)	300

※ 개선후 : 인가 필요 업무단위 등록 필요 업무단위

참고 3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과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비교

사회적 신용 요건 (자본법 §12②6, 6의2 및 영§16⑧)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2년주기 심사) (지배구조법 §32① 및 영§27②③④)
[심사시점] 신규인가시, 업무추가시	**[심사시점]** 진입 후 영업시
[대주주 심사대상]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실상 지배자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1인이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가 1인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
[심사요건] **□ 신규인가시** ① 최근 3년간 금융법령 및 공정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없을 것 ②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저해가 없을 것 ③ 최근 5년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법령에 따른 영업허가.인가.등록 취소된 대주주 등이 아닐 것 ④ 금융법령, 외국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 외국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점.영업점 폐쇄 또는 업무 정지이상 조치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업무추가시 완화된 요건** 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법, 조세법 위반으로 5억원이상 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5년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법령에 따른 영업허가.인가.등록 취소된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심사요건]** ① 지배구조법령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②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을 것 ③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법령에 따른 영업허가.인가.등록 취소된 대주주 등이 아닐 것 등 ④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최근 3년간 신용정보법령상 금융질서 문란 정보거래처 또는 채무 미변제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⑥ 최근 5년간 파산법상 회생절차,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책임이 없을 것
[불충족 경우] ㅇ 인가 불승인	**[불충족 경우]** ㅇ 6개월내 충족 조치, 금융회사와 적격대상과의 거래제한 등 이행상충방지 조치 ㅇ 불충족 사유 등을 주주 등이 알수 있도록 공시 **[금융질서, 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ㅇ 적격심사대상의 의결권있는 주식 10%이상 행사제한
	※ '18.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ㅇ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되는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 10%이상 처분 명령

참고 4 투자자예탁금과 예금보험금 지급 방법 비교

구 분	투자자예탁금	예금보험금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지급대상	지급사유발생시 예치기관이 예치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지급 (자본법§74⑥)	보험사고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 (예보법§31①)
지급사유	파산, 인가취소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자본법§74⑤)	보험사고 발생시(예보법§31①) 예금 등의 지급정지(1종) 영업인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종)
지급의 공고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금융위 승인으로 1개월 연장 가능(자본법시행령§73)	1종 보험사고 통지 기준 2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1개월 내의 연장 가능
지급금 계산	명시적 규정 없음	지급 공고일 기준 채권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 (예보법§32)
지급 기준금액	명시적 규정 없음	지급 공고일 현재 당해 부보금융회사의 원장 금액 및 명의 (예보규정§8)
지급 금지대상	명시적 규정 없음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 부실관련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6개월 범위내의 보험금 지급 보류 (예보규정§12①②)
지급한도	별도의 예치금 이내 (자본법시행령§75)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보법시행령§18⑥)
지급공고	일간신문 공지, 홈페이지 공시 (자본법§74⑤)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각 1개이상 1회이상 (예보법시행령§17②)
지급 업무대행	명시적 규정 없음	이사회의 의결로 대행 가능 (예보법§20, 예보규정§25)